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1431
- 발 의 자 : 권수정 의원 외 14명
- 발 의 일 : 2020년 4월 3일
- 회 부 일 : 2020년 4월 8일

2. 제안이유

- 서울시 및 산하 집행기관 등은 업무추진비를 각 기관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이는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서울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서울시 사무영역 및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자회사 설립을 통한 운영이 활발해지고 있음. 투자·출연기관, 공기업 등의 업무분담 역할을 목적으로 설립돼 운영되고 있는 자회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회사의 업무추진비를 공개 대상으로 포함하고자 함.
- 서울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함에 있어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화를 성과달성지표로 포함하는 등 자회사 역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시 조직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음.

- 서울시 6개의 자회사 중 3곳은 이미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 추진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으며, 이외 자회사 역시 행정사무감사, 의원요구자료 등을 통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음.

3. 주요내용

- 가. 서울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있어 자회사를 공개 대상으로 포함하고자 함(안 제2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입법예고(2020. 4. 13. ~ 4. 21.)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을 투자·출연기관 및 공기업 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자회사까지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제나목).

※ 현행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에서는 서울특별시와 그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과 산하기관(서울특별시 산하 공기업, 투자·출연기관 및 서울시립대학교)에 대하여, 매달 업무추진비를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조 및 제7조).

〈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그 밖에 유사한 성격의 업무추진비를 말한다.	1. -----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서울특별시 <u>산하 공기업, 투자·출연기관</u> 및 서울시립대학교(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	나. ----- <u>산하 공기업, 투자·출연기관과 그 자회사</u>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가 자회사 설립을 통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을 성과달성지표로 운영하는 등 이미 자회사를 서울시 조직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는바, 자회사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임.

※ 노동민생정책관에서는 교통공사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이 사회적 논란이 되기 전인 2018년도까지 BSC(Balanced Scorecard, 균형성과표) 성과관리에 ‘비정규직 정규직화 인원 수(누적)’를 평가 지표로 운영한바 있음.

○ 현재 서울시 지방공기업의 자회사는 6개로 이중 서울교통공사(구 서울도시철도공사)의 5개의 자회사 중 3곳*에서 업무추진비를 이미 공개하고 있음.

* 최초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2곳에, 공사 통합에 따라 서울메트로의 자회사 서울메트로환경(주)를 포함한 수치임.

※ 서울시 지방공기업 자회사 6곳 중, 서울교통공사는 2018년 이후 설립(김포골드라인운영(주), 소사원시선운영(주)된 2곳과, 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의 자회사 서울농수산물시장관리(주)는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지 않음.

〈서울특별시 공기업의 자회사 및 업무추진비 사용 공개 현황(6개 자회사)〉

해당 공기업	자회사 명칭	설립근거	설립일자	주요사업	업무추진비
서울교통공사	서울메트로환경(주)*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다른법인에 대한 출자)	2013.05.24.	역사 및 전동차청소, 시설관리(별관, 기지) 경비(기지, 인제개발원)	공개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2008.12.30.	시설관리 경비 유실물센터 물품보관 전달함 운영	공개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2013.03.26.	역사 및 전동차청소	공개
	김포골드라인운영(주)		2018.01.12.	김포도시철도 구간운영 및 유지관리 부대사업	미공개
	소사원시선운영(주)		2018.01.12.	서해선(소사-원시) 복선전철역 운영 시설물 유지보수	미공개
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	서울농수산물시장관리(주)		2013.12.02.	모바일장터, 강서 양육 주차 교통청소, 시설관리 등	미공개

* 통합(2017.5.31.) 전 지방공기업 '서울메트로'의 자회사

○ 서울교통공사 자회사의 업무추진비 공개 근거를 살펴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자회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를 평가지표로 설정하고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음.

* 2015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계획 통보(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평가과-859(2015.03.31.))

** 2015년도 반부패 청렴 시책평가 계획(서울도시철도 경영감사처-2322(2015.07.01.))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지방공기업 자회사에 대해서도 업무추진비 공개를 강제함으로써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대상 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취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가. 업무추진비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범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공공기관 행정 정보 공표 대상 기관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 지방공단, 출자·출연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은 공사의 설립(제49조)·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것으로 규정(제73조)하고 있고,
-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제54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자회사를 설립·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 「지방공기업법」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①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 자회사 : 해당 공사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제1호).

- 한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는 지방공기업인 지방공사의 자율·책임 경영을 제도적으로 지원¹⁾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²⁾」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 범위와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책임경영 지원과 자율적인 운영 보장 등을 규정한 관계 법규³⁾의 취지를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지방공사가 출자하여 운영하고 있는 별개 법인으로서의 자회사를, 조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통제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이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이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 서울특별시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 및 그 사용에 관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자치사무)에 관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1건)과, 지방공사와 그 자회사는 엄연히 별개의 별도 법인으로 자회사에 법령의 위임 없는 의무 부과에 관한 조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등 정보공개법 등 해당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2건)이 제출된바 있음.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시행 2008. 7. 17.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 발췌: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비용절감 및 사업다각화 추진 등 자율·책임경영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②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업무추진비 공개 관련 규정: [참고자료] 참조

〈 입법 · 법률고문 자문 결과 〉

구분	법률 자문	의뢰일자	2020년 4월 7일
질의 내용	<p>○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공개 대상을 지방공기업 등의 자회사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된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함.</p>		
자문 의견 1	<p>○ 조례 개정 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사만을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으로 규정. - 지방공사와 그 자회사는 엄연히 별개의 별도 법인으로, 자회사에 법령의 위임 없는 의무 부과에 관한 조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자문 의견 2	<p>○ 조례 개정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을 위배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 서울특별시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 및 그 사용에 관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고유사무(자치사무)에 관한 것으로,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상위법령에 반한다고 볼만한 내용이 없으므로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 할 수 있음. 		
자문 의견 3	<p>○ 조례 개정 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기업의 자회사는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정보공개법(제4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공기업 등의 자회사에 대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례는 위 정보공개법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 		

〈 재무국 검토의견〉

- 재무국 검토의견(재무과-21772(2020.4.20.)): 부결
 - 서울교통공사와 서울농수산물식품공사의 자회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추진비 등의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으며,
 - 지방회계법령상 업무추진비의 예산편성 및 집행 관련 적용 대상에도 지방공사의 자회사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본 조례 개정안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나. 투자기관 정의 명확화 필요성 여부

- 본 조례(제2조제1호제나목)에서는 서울특별시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 공개 범위를 ‘서울특별시 산하 공기업, 투자·출연기관 및 서울시립대학교’로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산하 기관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 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투자기관’이라는 명칭은 현행 법령에는 존재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 다만,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2조제3호에서는 “투자기관”을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 및 공단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나,
- 본 조례에서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과 사용내역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다른 조례(「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서 정의한 사항을

차용(준용 규정 없음)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 조례에 ‘투자기관’을 직접 정의하거나, 「지방공기업법」의 용어(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를 준용 규정하는 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 규정 수정의견 〉

현행	수정의견
<p>「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그 밖에 유사한 성격의 업무추진비를 말한다.</p> <p>가. 서울특별시와 그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시"라 한다)</p> <p>나. 서울특별시 산하 <u>공기업, 투자출연기관</u> 및 서울시립대학교(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p> <p>2. (생략)</p>	<p>「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p> <p>제2조(정의) ----- -----.</p> <p>1. ----- ----- ----- -----</p> <p>가. ----- -----</p> <p>나. 서울특별시 산하 「<u>지방공기업법</u>」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과 「<u>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u>」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 및 서울시립대학교(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p> <p>2. (현행과 같음)</p>

〈 투자기관 등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 기관에 관한 정의 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집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투자기관"이란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와 공단을 말한다.
4. "출연기관"이란 「민법」 제32조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 략)

6. 서울특별시장, 부시장, 실·국·본부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각 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 서울시립대학교 총장·부총장·학장·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5. 16.>

1.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그 밖에 유사한 성격의 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와 그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시"라 한다)

나. 서울특별시 산하 공기업, 투자·출연기관 및 서울시립대학교(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

2.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 및 산하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과 사용내역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최석훈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나.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6. 제5호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2.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

다. 「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

라.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4.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5. 공공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법 제2조제3호가목의 국가기관 및 같은 호 나목의 지방자치단체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의 일정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포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정기간행물을 발간·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을 발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및 산하 집행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열린 시정을 구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5. 16.>

1. "집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투자기관"이란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와 공단을 말한다.

4. "출연기관"이란 「민법」 제32조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울특별시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 제1호의 계획 중 집행기관이 정한 것에 관계된 중간 단계의 안
3. 서울특별시 해당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
4. 서울특별시 투자기관·출연기관의 해당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 및 결산
5.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6. 서울특별시장, 부시장, 실·국·본부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각 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 서울시립대학교 총장·부총장·학장·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서울특별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그 밖에 유사한 성격의 업무추진비를 말한다.
 - 가. 서울특별시와 그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시"라 한다)
 - 나. 서울특별시 산하 공기업, 투자·출연기관 및 서울시립대학교(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
2. "회계관계직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 및 산하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과 사용내역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7조(사용내역 공개)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산하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에는 기관 또는 부서명, 집행일자(시간 포함), 집행장소, 집행목적, 집행금액, 집행대상, 지출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① 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등) ① 공사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에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제47조제4항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하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별 수지분석
3. 재원 조달방법
4.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③ 공사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제57조의4(회계처리 등)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사장 또는 공사의 사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2018. 1. 16., 2019. 7. 9.>

1. 공사의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시키기 위하여 그 **자회사(해당 공사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또는 출자회사(해당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다른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인 법인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해당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에 따른 1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공사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제를 시행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로부터 그 성과를 확인받은 후 2년 이내에 해당 수탁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73조(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설립·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공사에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① 출자·출연 기관은 해당 기관의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